

목 차

정 관	1
-----------	---

정 관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주 식	2
제 3 장 사 채	8
제 4 장 주주총회	9
제 5 장 이 사, 이 사 회, 대 표 이 사	12
제 6 장 감 사	15
제 7 장 회 계	17
부 칙	20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크린앤사이언스"라 하며, 영문으로는 "Clean & Science Co.,Ltd"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필터 제조 및 가공 판매에 관한 사업
2. 부직포 제조 및 판매업
3. 탄소 섬유 및 관련 복합재료의 제조 및 판매
4. 합성섬유, 기타섬유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5.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

6.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7.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8. 유리 섬유 수지 제조 및 가공 판매
9. 여과지 제조 및 판매업
10. 종이 제조 및 판매업
11. 기타 여과소재 제조 및 판매업
12. 무역업
13. 도,소매업(필터, 여과지의 기타상품)
14. 막 제조업
15. 물 사업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 및 판매
16. 물 관련 시설의 운영, 유지, 서비스업
17. 환경 및 위생 관련 엔지니어링
18. 수처리 및 환경사업
19. 목재제품 도매 및 소매
20. 금속광물 도매 및 소매
2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22. 기타 금융 투자업
23. 경영 컨설팅업
2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업 및 이에 부수한 서비스업
25.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26. 기타 위 각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nd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 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2,400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 (삭제 2018. 12. 26)

제8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0,000,000주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연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 ⑦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⑧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⑨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0,000,000주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1%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연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 ⑥ 회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
는 경우

3. 상법 제542조3의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업무·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격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
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제11조 (삭제 2007.12.28)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
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
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④ 회사는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
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12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4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

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18. 12. 26)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업무·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1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2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사가 정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 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 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제 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 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 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및 경영권확보를 목적으로한 최대주주(자본시장법 133조에 의한 특별관계자 포함) 등의 변경 이후 이사회에서 기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2.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및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한 최대주주(자본시장법 133조에 의한 특별관계자 포함) 등의 변경 이후 이사회에서 신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선임에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
 3.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및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한 최대주주(자본시장법 133조에 의한 특별관계자 포함) 등의 변경 이후 이사회에서 회사의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정관 개정에 관한 의결

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 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33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4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4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당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총수의 50% 이상의 수를 해임할 수 없다.

제35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본 조 2항에 의한 퇴직금 제외) 1 회계연도 당 20억원 한도로 하고,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로 정하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사용인을 겸한 이사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별도로 정하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 ④ 이사가 임기 중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제2항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각각 100억원을 해임된 날에 지급한다.

⑤ 위 제4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 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43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4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45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46조 (감사의 선임·해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본 조 2항에 의한 퇴직금 제외) 1 회계연도당 3억원 한도로 하고, 세부사항

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로 정하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회 계

제51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 47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6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7월 1일 0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 ⑤ 정관 제9조의2, 제9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7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정관작성일서기 1986년 04월 01일 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1988년 08월 15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1990년 11월 10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1993년 03월 13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1996년 10월 31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1999년 11월 29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0년 06월 07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0년 06월 10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0년 07월 01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0년 08월 23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1년 03월 23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2년 03월 22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4년 03월 26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5년 06월 10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09년 03월 20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12년 03월 23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서기 2013년 03월 22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 서기 2016년 03월 18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 서기 2017년 06월 08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 서기 2020년 03월 20일 개정
정관개정시행일 서기 2021년 03월 19일 개정

주식회사 크린앤사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903-1호(삼성동, 무역회관)
대표이사 곽 규 범